

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  
(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)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400 |
|----------|------|

2021년 6월 16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년 5월 25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1년 5월 31일

다. 상정일자: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1년 6월 16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)

### 가. 제안이유

- 노원구는 당현천 및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, 서울특별시 노원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주민 편의시설인 「공중화장실」을 신축하고자 함.
- 이에 서울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규정에 의거, 서울시 부지 사용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골자

### □ 토지 및 시설 개요

- 위치 및 면적: 서울특별시 노원구 772(노원자원회수시설 내 부지), 40m<sup>2</sup>
- 소유자: 서울특별시(재산관리관: 자원순환과)
- 주요시설: 공중화장실

| 계  | 장애인용 |   | 남성용 |     | 여성용변기 |
|----|------|---|-----|-----|-------|
|    | 남    | 여 | 소변기 | 대변기 |       |
| 12 | 1    | 1 | 3   | 2   | 3     |

- 사업비: 300백만원(구비)
  - 화장실 구매 96백만원, 공사비 54백만원, 진입로 150백만원
- 사업기간: 2021. 7. ~ 2021. 10.

### □ 그간의 추진사항

- '21. 3.: 서울시 토지사용 가능 여부 문의(노원구→서울시)
- '21. 4.: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절차 안내(서울시→노원구)
- '21. 5.: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출(노원구→서울시)

### □ 시의회 동의 시, 향후 추진일정

- '21. 7.: 공사 발주 및 시행
- '21.10.: 공사 완료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### 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노원구 당현천과 중랑천변 합류부 시유지에 공중화장실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데 있어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

〈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지〉

### 나. 검토 의견

- 노원구는 당현천과 중랑천을 대상으로 ‘동네하천 재탄생’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하천으로 만들고 있으나,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, 두 하천의 합류부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1)하고 있음.

1) 당현천·중랑천변 합류부 공중화장실 설치 추진계획(노원구 자원순환과-11800, 2021.04.23.)

현재 시설 설치 추진계획과 예산(3억원, 전액구비)은 확보되어 있으며, 노원구와 서울시 간에 토지사용 가능 여부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등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태임.

다만,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부지(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2번지 일대)는 사유지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량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,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본 동의안은 대상 부지 반경 2km 이내 산책로에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지에 공중화장실을 축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으며, 공중화장실 설치를 통해 당현천 및 중랑천변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보행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#### 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]

**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**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량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]

**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** ① 법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~ 10. <생략>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---



〈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부지 위치도〉



〈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부지 현장 사진〉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내 영구시설물 축조 (노원구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)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40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노원구에서는 당현천 및 중랑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주민 편의시설인 「공중화장실」을 신축하고자 함
- 나. 이에, 서울시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부지 사용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토지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772(노원자원회수시설내 부지)
- 면 적 : 40㎡
- 소 유 자 : 서울특별시(재산관리관 : 자원순환과)

### 나. 시설 개요

- 주요시설 : 공중화장실

| 계  | 장애인용 |   | 남성용 |     | 여성용변기 |
|----|------|---|-----|-----|-------|
|    | 남    | 여 | 소변기 | 대변기 |       |
| 12 | 1    | 1 | 3   | 2   | 3     |

- 사 업 비 : 300백만원(구비)
  - 화장실 구매 96백만원, 공사비 54백만원, 진입로 15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21. 7. ~ 2021. 10.

#### 다. 그간의 추진사항

- 2021. 3. : 서울시 토지사용 가능 여부 문의(노원구→서울시 자원순환과)
- 2021. 4. :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절차 안내(서울시 자원순환과→노원구)
- 2021. 5. :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출(노원구→서울시 자원순환과)

#### 라. 시의회 동의시, 향후 추진일정

- 2021. 7. : 공사 발주 시행
- 2021.10. : 공사완료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 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량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.
  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 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####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## 다. 기 타 :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○ 위치도



○ 공중화장실 대상지 현장사진

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 신정엽(☎ 02-2133-3683)